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국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명(8급 11명)과, 지방노동위원회사무국에 심판사건 업무량 증가에 따라 노동약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6급 3명, 7급 3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업으로 건설 기능인력 적정 임금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5년 정기직제 결과를 반영하여 고용노동부 정원 5명(4급 2명, 5급 3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3급 또는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관서 정원 182명(6급 21명, 7급 102명, 8급 59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5급 21명, 6급 102명, 7급 59명) 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을 삭제한다.

별표 5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3”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7”을 “35”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0”을 “22”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를 “10”으로, 행정사무관 “115”를 “113”으로,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5”로 한다.

별표 6 중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1”을 “13”으로,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37”을 “35”로,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2”를 “24”로,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9”를 “10”으로, 행정사무관 “133”을 “131”로,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6”을 “5”로 한다.

별표 10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62”를 각각 “6,673”으로, 행정사무관 “209”를 “223”으로,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을 “25”로, 행정주사 “950”을 “985”로,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159”를 “193”으로,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61”을 “273”으로, 행정주사보 “1,093”을 “1,06

0”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24”를 “432”로,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0”을 “342”
로, 행정서기 “389”를 “375”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56”을 “62
2”로 한다.

별표 11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6,667”을 각각 “6,678”로, 행정사무관 “11
7”을 “131”로,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8”을 “25”로, 행정주사 “847”을 “882”로, 행정주사 또는 직
업상담주사 “179”를 “213”으로, 행정주사 · 공업주사 · 보건주사 · 시설주
사 또는 전산주사 “259”를 “271”로, 행정주사보 “1,079”를 “1,046”으로,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사보 “494”를 “502”로, 행정주사보 · 공업주
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63”을 “345”로, 행정
서기 “467”을 “453”으로,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616”을 “582”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5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본문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2	90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1	89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5	24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5	26	109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4	11	73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3		3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2	2	10
행정전문관	4	4	

[별표 13]

노동위원회 사무처와 사무국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3항 단서 관련)

구 분	계	중앙노동 위원회	지방노동 위원회
총계	366	94	272
정무직 계	1	1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장관급)	1	1	
일반직 계	365	93	272
고위공무원단	1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위원장)	12		12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상임위원)	8	2	6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1
서기관	7	1	6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4	4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2	2	
행정사무관	45	24	21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 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3	2	1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1	
행정주사	136	28	108
행정주사 또는 전산주사	1	1	
행정주사보	87	12	75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1	1	

행정서기	20	3	17
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	1	1	
운전서기	1	1	
행정서기보	5	1	4
방호서기보	2		2
운전서기보	12	1	11
기록연구사	1	1	
사무운영서기보	10	2	8
행정전문관	4	4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8조(한시정원) ①·② 삭제 ③~⑤(생략) ⑥ <u>건설기능인력의 적정 임금 보장 및 고용여건 개선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5년 2월 28일까지 별표 20에 따른 한시정원을 고용노동부에 두며, 별표 20의 정원 1명(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명)은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⑦·⑧ 삭제 ⑨~⑪(생략)	제28조(한시정원) ③~⑤(현행과 같음) <u><삭제></u> ⑨~⑪(현행과 같음)

신 · 구정원대비표

[별표 5]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u>11</u>	<u>13</u>	+2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7</u>	<u>35</u>	-2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0</u>	<u>22</u>	+2
·	·	·	
서기관 · 과학기술서기관 ·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u>9</u>	<u>10</u>	+1
행정사무관	<u>115</u>	<u>113</u>	-2
·	·	·	
·	·	·	
공업사무관 · 보건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	<u>6</u>	<u>5</u>	-1

	.	.	.	
	.	.	.	

[별표 6]

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 기술서기관	<u>11</u>	<u>13</u>	+2
·	·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37</u>	<u>35</u>	-2
·	·	·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u>22</u>	<u>24</u>	+2
·	·	·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 또는 시설 사무관	<u>9</u>	<u>10</u>	+1
행정사무관	<u>133</u>	<u>131</u>	-2
·	·	·	
·	·	·	
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 또 는 시설사무관	<u>6</u>	<u>5</u>	-1
·	·	·	
·	·	·	

[별표 10]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62</u>	<u>6,673</u>	+11
일반직 계	<u>6,662</u>	<u>6,673</u>	+11
·	·	·	
·	·	·	
행정사무관	<u>209</u>	<u>223</u>	+14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8</u>	<u>25</u>	+7
·	·	·	
행정주사	<u>950</u>	<u>985</u>	+35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59</u>	<u>193</u>	+34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261</u>	<u>273</u>	+12
·	·	·	
·	·	·	
행정주사보	<u>1,093</u>	<u>1,060</u>	-33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424</u>	<u>432</u>	+8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60</u>	<u>342</u>	-18
•	•	•	
•	•	•	
행정서기	<u>389</u>	<u>375</u>	-14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56</u>	<u>622</u>	-34
•	•	•	
•	•	•	

[별표 11]

지방고용노동청·지청 및 출장소 공무원 정원표(제24조제2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6,667</u>	<u>6,678</u>	+11
일반직 계	<u>6,667</u>	<u>6,678</u>	+11
·	·	·	
·	·	·	
행정사무관	<u>117</u>	<u>131</u>	+14
·	·	·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8</u>	<u>25</u>	+7
·	·	·	
행정주사	<u>847</u>	<u>882</u>	+35
행정주사 또는 직업상담주사	<u>179</u>	<u>213</u>	+34
행정주사·공업주사·보건 주사·시설주사 또는 전 산주사	<u>259</u>	<u>271</u>	+12
·	·	·	
·	·	·	
행정주사보	<u>1,079</u>	<u>1,046</u>	-33

행정주사보 또는 직업상담주 사보	<u>494</u>	<u>502</u>	+8
•	•	•	
•	•	•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보건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u>363</u>	<u>345</u>	-18
•	•	•	
•	•	•	
행정서기	<u>467</u>	<u>453</u>	-14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u>616</u>	<u>582</u>	-34
•	•	•	
•	•	•	